

2007.4.14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해설

- 송시우교수

총평

안녕하세요 행정법교수 송시우입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 시험을 보니라고 수고했습니다. 미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해 봅니다.

2007년 4월 14일 실시된 국가직 9급 시험에서의 행정법총론부분은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아마도 출제위원이 문제가 공개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다소 쉽게 출제한 듯합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보면,

1. 법조문 자체를 묻거나 법조문을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5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법이 법학이라는 점에서 법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2. 또한 판례의 비중이 예년에 비하여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즉, 판례를 문제가 대략 9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3. 이러한 점들을 분석하여 보면 법학의 기본이 법전이라는 점과 이를 현실에 응용하는 부분이 판례라는 점을 출제위원들이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직 시험은 각종의 지방직 시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출제경향에 맞는 공부방법을 통하여 남아 있는 지방직 시험에 대비함이 좋을 것입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07년국가직 9급)

- ① 현물보상의 원칙
- ② 개인별보상의 원칙
- ③ 사전보상의 원칙
- ④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795참조, 송시우행정법 핵심총정리집 P.72 11번,12번 참조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보상금지급의 원칙은 동법 제61조의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④), 동법 제62조의 선불지급의 원칙 내지 사전보상의 원칙(③), 동법 제63조 제1항의 현금보상의 원칙 내지 금전보상의 원칙 및 동법제64조의 개인별보상의 원칙(②)이다. 현물보상의 원칙은 금전보상의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것이다.

【정답】 ①

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 ②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 ③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 ④ 집행정지결정권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P847, P849

①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은 재결청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②,③,④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행정심판법 제6조 제4항), 집행정지결정권(행정심판

법 제21조 제2항)은 재결청의 권한이며, 재결청은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를 부담한다(행정심판법 제22조 제1항).

【정답】 ①

3.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07년 국가직 9급)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을/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가산금
- ② 부당이득세
- ③ 과징금
- ④ 이행강제금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620, 송시우행정법 핵심총정리집 P60 4번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 제1항 각호의 1에 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이는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을 이유로 인·허가사업 등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국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허가사업의 정지 등의 제재적 수단 대신에 금전적 이익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징금으로서,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제도라고도 한다.

【정답】 ③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 ②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④ 성문법주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Ⅰ P66 ~ P70

- 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②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없다. 즉,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유사사건에 관한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8조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행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므로(헌법 제6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의회의 입법절차없이도 당연히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④ 현대행정은 질적

5.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07년 국가직 9급)

- 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②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 ④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 【I】 P130 ~ 138, 송시우행정법 핵심총정리집 P22 15번, 16번, 17번

- ① 공정력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있는 행정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② 공정력과 입증책임은 상호무관계하다.
- ③ 나이를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는 취소사유가 있는 운전면허에 불과하므로 이에도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취소의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지 전까지는 타 국가기관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므로, 그 운전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도 형사소송의 형사법원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1982.6.8. 80도2646).
- ④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치는 효력이다.

【정답】 ③

6.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 ②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건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760, 송시우행정법 핵심총정리집 P71 판례자료

- ①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은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즉, 공적 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이 아닌,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공물을 뜻한다(통설·판례).
- ②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1998.10.23. 98다17381).
- ③ 경찰건도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로 보아야 한다.
- ④ 대법원은 “매항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대판 2004.3.12. 2002다14242).

【정답】 ③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 ②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 ③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④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 I P359

- ① 일반적으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지는 못한다. 다만, 부관 중 부담만은 독립성을 갖는다.
- ②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다.
- ③ 통설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한하여 부관이 붙여질 수 있고, 기속행위는 부관이 붙여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④ 부담만은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부담만의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대판1992.2.21. 91누1264)의 입장이다.

【정답】 ④

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 ③ 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 ④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 I P501, 송시우멘토행정법 I P506, 송시우멘토행정법 I P122 표 10번

- ① 공법상 계약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 ②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합동행위이다.
- ③ 판례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 ④ 고궁(특히 창덕궁)안내원들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속한다.

【정답】 ③

9. 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처분의 사전 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 ③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개신청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648, 송시우행정법 핵심총정리집 P63 판례,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901,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865,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921

- 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2003.11.28. 2003두674).
- ②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 공권력행사의 거부일 것,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것, ㉢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 ④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행행위영업허가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재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당초 허가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불허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따라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1993.2.10. 92두72). 즉, 위 판례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정답】 ④

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 ④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559송시우멘토행정법Ⅰ P376,

- ①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은 강학상 특허로서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②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관념의 통지가 아닌, 상대방에게 대집행의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청은 대집행실행권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의사의 통지행위에 해당한다.
- ③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행정경제를 도모함에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면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

외된다(대판1998.7.10. 96다38971).

【정답】 ③

11.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기속력 ② 공정력 ③ 기판력 ④ 형성력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930 ~ 933

- ①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② 공정력은 취소판결의 효력이 아니다.
③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은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 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 ;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기판력이라 한다. 이러한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및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다시 이를 취소하지 않아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바, 이러한 취소판결의 효력을 형성력이라 한다.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④

12.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②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④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Ⅰ P480, 483

- ① 판례는 확약의 행정행위성을 부정하고 있다(대판1995.1.20. 94누6529).
②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그 위반시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을 원용(즉,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④ 행정청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태 내지 법률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확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대판1996.8.20. 95누10877).

【정답】 ②

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집행벌
② 행정상 강제징수
③ 직접강제

④ 행정상 즉시강제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565 핵심문제참조

- ③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직접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③

14.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
②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③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④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뉘어진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Ⅰ P327, 334

- ① 명령적 행정행위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②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내용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기타 제재가 과하여 지는 것이 보통이다.
③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행위로서의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임의대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를 의미한다.
④ 명령적 행정행위가 아닌 형성적 행정행위가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뉘어진다.

【정답】 ②

15.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②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③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는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Ⅰ P338

- ①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면 족하지 계약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③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사법상의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④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며, 그 법률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인가가 있는 후에도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①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07년 국가직 9급)

- ① 지방의회의 의장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③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④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 II P905, 송시우행정법 핵심총정리집 P64 판례

-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판1995.1.12. 94누2602).
- ②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았다(대판2004.7.22. 2003두7606).
- ③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2006.5.25. 2006두3049).
- ④ 헌법재판소(헌재2003.6.26. 2002헌가14)의 입장이다.

【정답】 ②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②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 I P213, 214, 216

- ① 공무원의 사직원제출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면직처분이 있는 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대판2001.8.24. 99두9971).
- ②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공법행위인 영업재개업신고에 민법 제107조는 적용될 수 없다 (대판1978.7.25. 76누276).
- ③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대법원은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대장상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

왔다(대판1992.3.31. 91누4911).

【정답】 ④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697, 699, 701

- ①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자(死奴) 내지 법인의 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본문).
- ③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2조).

【정답】 ③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대집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555, 560

-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이다. 감독청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토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퇴거에 의한 점유이전은 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집행에 의하여 강제할 수 없다(대판 1998.10.23. 97누157).
- ③ 대집행절차 상호간 즉, 계고 → 대집행영장의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징수 상호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나(통설·판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즉, 철거명령) 과 대집행절차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 ④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부정된다.

【정답】 ②

2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7년 국가직 9급)

- ①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 ③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송시우멘토행정법Ⅱ P681,688,688

-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상의 알 권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헌재 1989.9.4. 88헌마22).
- ② 이해관계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공개대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③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④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정답】 ③